

이사회 의사록

1. 일 시 : 2024년 04월 01일 10시
2. 회의장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, 33층(삼성동, 아셈타워) 회의실
3. 참석자 :

이사 총 수: 3명	출석 이사 수: 3명
감사 총 수: 1명	출석 감사 수: 1명

의장인 대표이사 박형우는 의장석에 등단한 후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설명하고 회의를 선언하고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.

제1호 의안 : 신주 발행의 건(보통주식, 주주배정)

의장은 주주배정방식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,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.

- 다 음 -

-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금액 : 금 27,534,064,000 원
- 발행할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보통주식 6,883,516 주
- 신주의 액면가액 : 1 주당 금 2,000 원
- 신주의 발행가액 : 1 주당 금 4,000 원
- 신주의 배정기준일 : 2024년 04월 01일
- 신주 청약일 : 2024년 04월 02일
- 신주의 주금납입기일 : 2024년 04월 02일
- 신주의 인수방법 :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주식을 배정하여 각 각 인수케 하고, 단주가 발생될 경우에는 그 단주는 배정하지 아니함.
- 신주인수대금의 납입방법 : 전액 현금 납입
- 실권주의 처리 : 신주인수인이 그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기일 내에 청약을 하지 아니한 신주식은 실권처리하며 재발행하지 아니함.
- 최고 :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인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절차는 신주인수

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생략하고 단축함.

- 주금납입은행: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파이낸스피비센터지점
- 기타사항: 기타 신주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사항이나 부수적인 조건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.

제2호 의안 : 신주 발행의 건(제1종종류주식, 제3자배정)

의장은 당 회사의 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묻은 바, 참석 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2호 의안을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.

- 다 음 -

I. 제1종종류주식 발행에 관한 조건

-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할 금액 : 금 8,000,000,000 원
- 발행할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제1종종류주식 2,000,000 주
- 신주의 액면가액 : 1 주당 금 2,000 원
- 신주의 발행가액 : 1 주당 금 4,000 원
- 신주의 인수방법 :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식 전부를 아래와 같이 배정함.

- 아 래 -

주식의 종류	신주인수인	배정주식수(주)	금액(원)
제1종종류주식	김 은 영	1,125,000	4,500,000,000
제1종종류주식	주식회사 미도컨설팅	125,000	500,000,000
제1종종류주식	글로벌스영 주식회사	750,000	3,000,000,000
합 계		2,000,000	8,000,000,000

- 신주 청약일 : 2024년 04월 02일
- 신주의 주금납입기일 : 2024년 04월 02일
- 신주인수대금의 납입방법 : 전액 현금 납입 (단, 당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액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금납입을 하지 아니함)
- 실권주의 처리 : 신주인수인이 그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청약기일 내에 청약을 하지 아니한 신주식은 실권처리하며 재발행하지 아니함.

- 최고 :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인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고절차는 신주인수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생략하고 단축함.
-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: 제 3 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상법 제 418조 제4항에 따른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생략하고 단축함.
- 주금납입은행 : 주식회사 하나은행 강남파이낸스피비센터지점 (단, 당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채권액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금납입을 하지 아니함)
- 기타 신주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사항이나 부수적인 조건 결정은 대표이사에 게 일임함.

II. 제 1 종종류주식에 관한 내용

- ① 회사가 발행하는 제1종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있다.
- ② 제1종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누적적, 참가적인 것으로 한다. 단, 본 조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- ③ 회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다.
 1. 제1종종류주식의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 9%의 배당률(이하 “우선배당률⁽¹⁰⁾”)로 해당 결산기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제1종종류주식에 배당
 2.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결산기에 있어서 발행가액에 대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
 3.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라 배당하고 남은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
- ④ 배당금 산정에 있어서 산정기간은 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배당금 계산에 있어서의 산정기간은 최초 발행주식의 발행가액 납부일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결산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.
- ⑤ 회사 청산시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
 1. 제1종종류주식에 대하여, 제1종종류주식의 발행가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하여 제1종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잔여재산 분배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 9%의 배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제1종종류주식에 지급된 배당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
 2. 제 1 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보통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

분배

-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(주식배당 포함)를 실시하는 경우, 각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의 의안이 전부 심의 종료되었음을 설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.
(종료시간 10시 30분)

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.

2024년 04월 01일



주식회사 인마크노랑진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. 대표이사 박 형 우



기타비상무이사 류 승 호



기타비상무이사 장 재 경



감 사 이 태 운

